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관련 서식 등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항제1호 중 “치료감호소(이하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의 기호(○)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지			
	죄 명			
	치료감호 선고 사건번호			
총 연장 횟수	○회	집행 받은 치료감호 기간	○○년 ○○월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시 별지 기재			
첨 부				

○○지방검찰청

○ 집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발 신 ○○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을 지휘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주 거 지	
	죄 명	
결 정	법 원 및 일 자	○○ 지방법원 . . .
	확 정 일	
	치 료 감 호 기 간	
비 고		
첨 부	결정문 등본 1통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치료감호자의 동태를 보고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주 거 지
치료감호 집행사항	죄 명	병 명
	치료감호 개시일	입소(입원)일자
보고 대상 기간	. . . ~ . . .	
보고 내용		
참고 사항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출소 후 거주예정지			
거주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출소 후 생활계획 기타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병원장)의 요구사항			

본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귀하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보호관찰관
참 조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피치료감호자출소통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소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합니다.

사진	성 명			성 별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입소 전 주소			주민등록번호		
	종 교	가입단체		병역 관계		
	학 력	경 력		해외여행 관계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출소후의 생활계획						
출소 후의 동거 가족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재산상태
교우관계						
치료 감호 판결 내용	판결법원	판결연월일	치료감호 기간	죄명	형명 및 형기	
	전과 및 감호경력					
	범죄사실요지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출소 사유		가중료 치료위탁 기타()				
비고						

국립법무병원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

연번	진료일자	성명	생년월일	진료의사	병명	비고

국립법무병원(국립 ○ ○ 병원)

년 월 일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진료과	병명	진료일자	청구금액	비고

첨부: 국립법무병원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 지방검찰청

20 치신 제 호

의
의
의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 신 ○○ 지방검찰청

참 조

검 사 (인)

제 목 : 심사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첨부	1.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1통 2. 치료감호사안조사기록 3. 치료감호판결등본 4. 형 및 치료감호집행기록 5. 서약서	

이 유

국립법무병원
○○보호관찰소

수 신 ○ ○ 지방검찰청검사장

년 월 일

발 신 (인)

제 목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의 견		
첨 부		

국립법무병원
○○보호관찰소

20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검찰청검사장

발 신 (인)

제 목 심사신청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치료감호처분	판결선고법원		보호관찰 개시일자	년 월 일
	판결내용		보호관찰 개시사유	
	잔여치료감호기간	년 월 일	보호관찰 종료예정일	년 월 일
의 견				
첨 부				

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앞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세)
	주 소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지	
	치료감호집행 개시일	. . .

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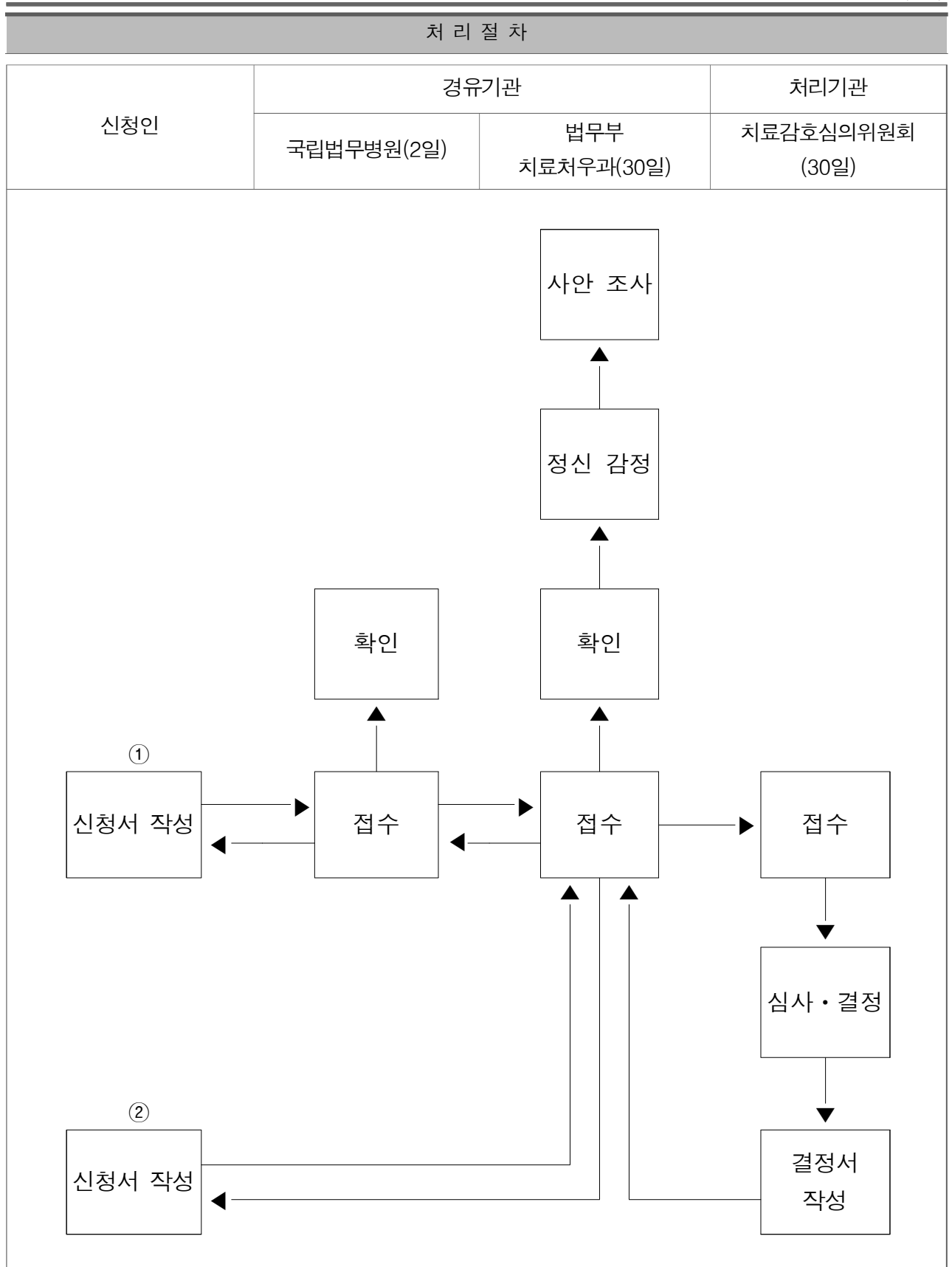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감호판결서 등본 2.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 소명자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	---

이 신청서는 국립법무병원이나 법무부(치료처우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국립법무병원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년 월 일

참 조

발 신

(인)

제 목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치료감호집행 개시일	
의 견		
첨 부	진단서 또는 결정서	

기부금품 접수·사용 대장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기부일자		. . .	. . .	. . .
기 부 자	① 성명(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소재지)			
	④ 연 락 처			
	⑤ 직업 및 직위			
기 부 내 역	① 금 액			
	② 품명 및 수량			
	③ 용 도			
	④ 특 기 사 항			

사용일자	. . .	. . .	. . .
사용내역			
처 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기부자의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소득공제 등의 용도)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 다만, 개인인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불기재 가능(기관 또는 단체인 기부자가 사업자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재 가능)
2. 기부내역의 ① 금액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고,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
3. 기부내역의 ② 품명 및 수량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기재
4. 기부내역의 ③ 용도란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
5. 기부내역의 ④ 특기사항란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인사장 발송 내역 등 특기사항을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가중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중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치료감호소</u>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u>치료감호소</u> 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u>치료감호소</u>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保護拘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가중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 ----- ----- ----- <u>국립법무병원</u> ----- <u>병원</u> ----- ----- <u>국립법무병원</u> ----- <u>원</u> ----- ----- ----- ---- <u>국립법무병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u>치료감호소</u>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 ----- <u>국립법무병원</u> ----- ----- -----.

② (생략)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립법무병원

-----.

④ -----

- 국립법무병원 -----

-----.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

-----.

----- 국립법무병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립법무병원 -----

-----.